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8 발의연월일: 2025. 5. 21.

발 의 자:고동진·김위상·서명옥

조지연 · 조경태 · 박정훈

이달희 · 박덕흠 · 송석준

주호영 · 김장겸 의위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%로 제한하고,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, 임대 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(안 제1 9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"분담"을 "분담, 관리비 부과 항목"으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)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 납부기일에 임대인에게 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공개를 요청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공개 범위·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 법 제19조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 --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, 차임액, 임대차기간, 수선비 분담 등의 -----분담, 관리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 비 부과 항목-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. 제19조의2(관리비의 납부 및 공 <신 설> 개 등)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 약 시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유 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약정 한 경우 납부기일에 임대인에 게 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 다. 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 를 요청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 터 공개를 요청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공개 범 위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